

2026년 공공기관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구)화성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차)

화성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7. 28.

화 성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공공기관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 지원규모: 2~3개사 내외 ※기업별 실 지원금액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中,

『2026년도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OKTA의 해외지사화사업 (1차 ~ 6차, 발전 단계)』 참가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사업기간: 해외지사화사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서비스 기간 내(6개월~1년 간)
- 지원내용: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 해외지사화사업』의 무역관(지역) 별 해외지사화 사업비(참가비)의 60%(최대 300만원) 지원

※ 사업비(참가비)의 실 납부액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

※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 해외지사화사업』 발전단계만 지원

※ 기업당 최대 1개 무역관(지역) 참가비 지원 가능

※ 상기 지원 내용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 해외지사화사업 발전단계

(단위 : 만원)

단계	주요 지원내용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OKTA 수행)	수행 기관	사업 기간	참가비 ※지역별 상이	화성시 지원금
발 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자문, 출장지원, 기존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	KOTRA	6개월	150~360	참가비의 60%, 최대 300만원 지원
		OKTA	6개월	100~355	
		중진공	9개월	225~375	
		KOTRA	1년	250~600	

- ※ 무역관(지역) 별 참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엑셀 파일 참고
- ※ 참가기업으로 선정 시 중도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 시 향후 2년 간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 ※ 해외지사화사업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중도 해지 시 향후 2년 간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 ※ 발전단계: 수출성약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 홈페이지 참고
 -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6TF003&cpbizYn=N>
 -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smes.or.kr/nsh/SH/REM/SHREM022M0.do>
 - ☞ OKTA(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홈페이지 :
https://www.okta.net/site/okta/page/major_project/localize/

□ 신청방법

○ 모집(신청)기간: 2026. 7. 28.(화) ~ 8. 21.(금) 18:00까지

- ※ 본 지원사업은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의 해외지사화사업』의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의 해외지사화사업』에 참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 ※ 본 지원사업은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의 해외지사화사업』에 참가비를 납부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므로, 해당 사항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 온라인 접수(대면 접수 병행하지 않음)

➔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 가입 후 지원 신청

- ※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2026년 공공기관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2차) → 참여신청
- ※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모든 구비서류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이메일 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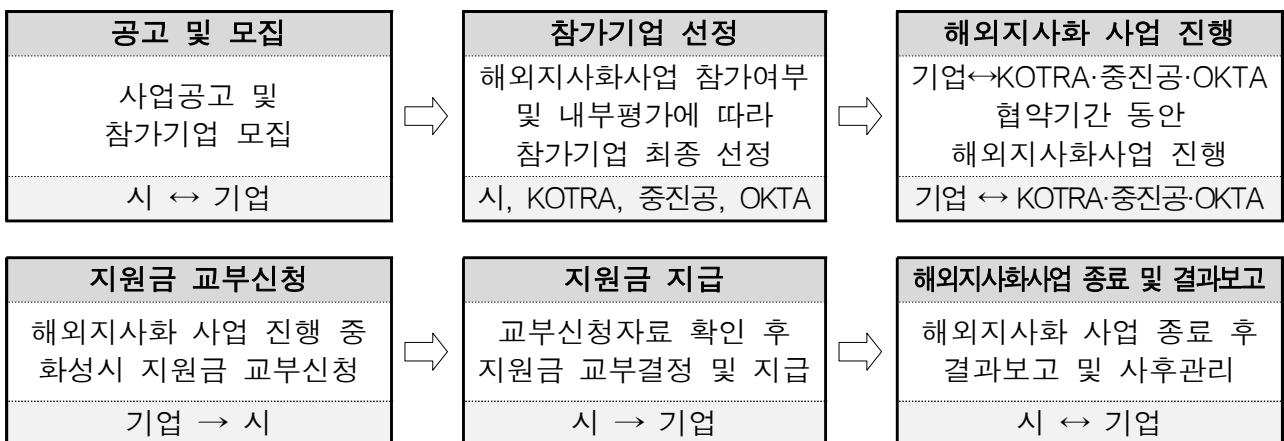
□ 선정방법

-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의 해외지사화사업』 수용 여부 확인 및 내부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주요항목: 해외규격인증·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공공인증서 건수, 수출준비도,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지원수혜도, 소재지, 고용안정성, 기업업력
 - 평가결과 동점 발생 시, ①통상지원사업 수혜실적 적은 기업, ②기업업력 낮은 기업, ③고용안정성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2026년 9월 중 공고 또는 개별 안내(예정)
 - ※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의 해외지사화사업 수용 가능 여부 결과 회신 등에 따라 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 [2026년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 타 기관 동일 내용 중복지원 기업
- 『2026년도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의 해외지사화사업』에 미참가하는 기업 및 참가비를 미납한 기업
- 필수 서류 미제출 기업

□ 사업 절차



※ 지원사업 관련 공지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기업에 있음

□ 문의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통상지원팀 ☎ 031-5189-2872

□ 제출서류

순번	내역		비고
1	지원신청서	서식 1-1	필수서류
2	서약서	서식 1-2	
3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3	
4	각종 인증서 현황(목록)	서식 1-4	
5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X)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본사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6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제출	
7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제출	
8	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필수 제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	
9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조장 소재지의 서류 제출	해당 시 (가점)
	◆ 본사가 화성시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서류 필수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해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10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총 2부)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산재포탈 이용 / 종업원수 확인용)	
11	각종 인증서 사본	해외규격인증,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공공인증서 ※목록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자료 첨부	
12	회사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2부	[앞표지], [제품 사진이나 설명이 보이는 페이지] 각 1부	
13	회사 외국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메인화면 캡처본 또는 URL	
14	회사 외국어 홍보 동영상 캡처본 또는 URL	동영상 재생/정지 버튼이나 동영상 길이 등이 보이도록 캡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제출 시, 건축물대장 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신청서 양식 참고

참고

202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1. 공공기관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해외지사화 사업 지역별 단가표 1부. 끝.